

자금운용규정

전문개정 2005.12.15.
개정 2006.12. 8(개폐정리)
개정 2009. 2.25(개폐정리)
개정 2010.11.25
개정 2011. 6. 9(개폐정리)
개정 2013. 4.30(개폐정리)
개정 2014.11.11.
개정 2015. 6.30(개폐정리)
개정 2015.12.24.(개폐정리)
개정 2016.12.27.
개정 2017. 3.13
개정 2018.10.30.(개폐정리)
개정 2019.11.22.
개정 2020. 9. 9.(개폐정리)
개정 2020.12.21.
개정 2022. 6.24.

제 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68조에서 정하고 있는 여유자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7.><개폐정리 2018.10.30.>

제2조 (적용범위) 자금의 운용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유자금”이라 함은 공사의 고유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보유

하고 있는 현금, 예치금, 유가증권 등의 자금을 말하며, 운용목적 및 기간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7. 3. 13>

가. 현금성자금: 운용기간이 3개월 이하이거나 수시인출이 가능한 자금을 말한다.<신설 2017.3.13.>

나. 유동성자금: 운용기간이 3개월 초과 1년 미만인 자금을 말한다.<신설 2017.3.13.><개정 2019.11.22.>

다. 단기자금: “현금성자금”과 “유동성자금”을 말한다.<신설 2017.3.13.>

라. 중장기자금: 운용기간이 1년 이상인 자금을 말한다.<개폐정리 2015. 6.30><신설 2017.3.13.><개정 2019.11.22.>

2. <삭제 2017.3.13.>

3. <삭제 2017.3.13.>

4. <삭제 2017.3.13.>

5. “목표수익률”이라 함은 자금운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전적으로 설정하는 자금운용수익률의 목표치를 말한다.<신설 2020.12.21.>

6. “허용위험한도”라 함은 자금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률 감소 등의 불리한 결과에 대한 수용 가능한 정도를 말한다.<신설 2020.12.21.>

7. “기준수익률”이라 함은 운용자금의 운용성과를 비교·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자산배분에 사용된 자산의 사후적 실현수익률을 말한다.<신설 2020.12.21.>

8. “자금운용담당자”(이하 “운용담당자”)라 함은 자금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개정 2020.12.21.>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에 대한 정의는 관련법령, 관련 제규정 및 시장관행의 순서에 따른다.

제4조 (자금운용담당자) ① 운용담당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운용담당자는 항상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 2장 자금의 운용

제5조 (자금운용 원칙) ① 자금운용은 공사의 설립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안정성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운용하여야 한다.<개폐정리 2015. 6.30>

② 주택분양보증은행 등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안정성 및 유동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익성을 도모하여 여유

자금 확대에 기여하여야 한다.

④ 공공성을 고려하여 정부의 정책추진방향에 부합하도록 운용할 수 있다.

제6조 (자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운용담당자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연간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연간자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금수급계획
2. 자금운용방향
3. 자금운용실적
4. 자금운용전략 및 배분계획
5. 목표수익률 및 허용위험한도
6. 기타 필요한 사항

③ 금융시장의 환경변화 및 자금수급의 급변으로 인하여 연간자금운용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거래금융기관) 자금을 거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개정 2010.11.25>
2.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에 따른 농협은행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 <개정 2010.11.25., 2019.11.22>
3.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개정 2010.11.25>
4.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개정 2010.11.25>
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투자업자, 종합금융회사, 증권금융회사 <신설 2010.11.25>
6.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신설 2010.11.25>

제8조(거래금융기관의 선정 및 평가) ①거래금융기관은 공사자금의 운용목적과 거래금융기관의 신용평가등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개폐정리 2015. 6.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선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폐정리 2020. 9. 9>

제9조(거래한도)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선정된 거래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위험관리를 위하여 각 금융기관별 거래 한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0조(운용상품의 선정) 운용상품을 선정할 때에는 정관 제68조의 범위내에

서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유동성 및 수익성은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개정 2016.12.27.><개폐정리 2018.10.30.>

제10조의2(운용상품의 범위) 정관 제68조에 따라 투자 가능한 운용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2020.12.21.>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지방채의 매입과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사채 및 그 밖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인수·매입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운용방법에 따른 자산의 매입

제11조 <삭제 2020.12.21.>

제12조 <삭제 2020.12.21.>

제13조(자금운용 방법) ① 자금운용은 내부운용 및 위탁운용으로 구분하며, 정기예금 등 확정금리 상품과 현금성 자금은 내부운용, 실적배당상품은 위탁운용 한다.<개정 2017.3.13.>

② 위탁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탁운용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0.12.21.>

제14조 (자금의 집중관리) 자금은 소관부서에서 집중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칙에서 정하는 영업부서의 보유한도내의 자금은 예외로 한다.<개폐정리 2015.12.24.><개정 2017.3.13.>
[본조개정 2010.11.25]

제15조(현금시재의 보유) 현금시재는 소액의 지출경비등 소액출납에 충당할 수 있는 범위내로 한다.

제16조(자문서비스) 자금운용 절차 전반에 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3.13., 2019.11.22>

제3장 자금운용위원회

제17조 (자금운용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자금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금운용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자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리스크소관부서장, 소관부서장 및 외부전문가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시 위원장이 지정하는 직원을 추가할 수 있다. <개폐정리 2009.2.25, 2011.6.9., 2013.4.30., 2015.12.24.><개정 2016.12.27., 2017.3.13., 2019.11.22>

③외부전문가는 금융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한 자 또는 자금운용에 대한 경력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제18조 (자금운용위원회의 기능) ①자금운용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삭제 2017.3.13.>
2. 자금운용정책 및 방향에 관한 사항
3. 자금운용전략에 관한 사항
4. 연간자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신설 2017.3.13.>
5. 총허용위험한도의 설정에 관한 사항<신설 2017.3.13.>
6. 위탁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신설 2017.3.13.><개정 2022.6.24>
 - 가. 위탁운용 총 규모
 - 나. 위탁운용기간

②자금운용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삭제 2017.3.13.>
2. <삭제 2017.3.13.>
3. <삭제 2019.11.22.>
4. 위탁운용에 관한 일반사항 <신설 2017.3.13.><개정 2022.6.24>
 - 가. 전담운용기관 수
 - 나. 전담운용기관간 자금배분
 - 다. 자산유형별 배분계획
5. <삭제 2020.12.21.>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 제 1항 각호는 이사회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17.3.13.>

제19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관장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소관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1.25., 2017.3.13., 2019.11.22><개폐정리

2015.12.24>

제20조 (위원의 임기) 위촉된 외부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1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팀장으로 한다.<개정 2016.12.27., 2017.3.13>

[본조개정 2010.11.25]

제23조 (수당의 지급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내부 임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본조개정 2010.11.25]

[본조삭제 2014.11.11]

제 4장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

제25조(위험관리 원칙) ① 운용담당자는 투자위험 및 자금배분의 적정성 분석 등 위험관리를 통해 운용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② <삭제 2019.11.22.>

③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허용된 위험에 대하여는 수익 대비 과도하거나 추가적인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위험관리의 방법) 운용담당자는 위험관리를 위하여 설정된 각종 한도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준수여부를 상시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27조(위험관리 세부사항 등) 자금운용의 위험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리스크관리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11.22.><제28조에

서 이기, 2020.12.21.>

제28조(성과평가 원칙) ① 공정하고 투명한 성과평가를 위하여 성과평가 기준을 명확히 설정한다.

② 성과평가는 자금운용과 독립된 부서에서 수행하며,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성과평가기관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12.21.>

제29조(성과평가 기준) ① 사전적으로 자산운용의 방향을 제시하고 사후적으로 성과평가의 지표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준수익률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목적에 따라 기준수익률 외 다른 정량 또는 정성적인 평가지표를 평가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성과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0.12.21.>

제30조 (운용실태점검) ①운용담당자는 자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매월 운용실태를 점검하고 매 분기마다 소관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2.>

②제1항의 자금의 운용실태 점검결과 운용실적이 우수한 거래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거래한도를 증액하는 등의 우대를 할 수 있고, 운용실적이 저조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거래한도의 축소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27조에서 이기, 2020.12.21.>

제 5장 자금의 송수신 및 처리

제31조 (자금의 청구 및 이체) ①영업부서장은 자금이 필요할 때에는 자금청구서에 의하여 운용담당자에게 청구하며, 운용담당자는 자금의 용도 등을 확인한 후 자금을 송금하여야 한다.

②본·지사간의 자금송수는 거래은행 예금계좌를 통하여 온라인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9조에서 이기, 2020.12.21.>

제32조 (1일 자금처리) 1일 소요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폐정리 2020. 9. 9><제30조에서 이기, 2020.12.21.>

제33조 (자금현황보고) 운용담당자는 효율적인 자금조달 및 운용을 위하여 매 월 자금현황을 파악하여 전결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폐정리 2020. 9. 9><제31조에서 이기, 2020.12.21.>

제 6장 보칙

제34조 (공시의범위등) 자금운용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내용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수 있다.<개정 2017.3.13.>

1. 연간 공시 : 자금운용규정, 연간 자금운용현황,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개정 2020.12.21.>
2. 수시 공시 : 기타 자금운용의 주요 결정사항과 관련하여 공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2조에서 이기, 2020.12.21.>

제35조 (세부사항) 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개폐정리 2020. 9. 9><제33조에서 이기, 2020.12.21.>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2006년도 연간자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6. 12. 8>

이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2. 25>

이 규정은 200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1. 25>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6. 9>

이 규정은 201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4. 30>

이 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1.11>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6.30>

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2.24>

이 규정은 2015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12.27>

이 규정은 201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3.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사규의 개정) 이사회 규정 [별표]에 다음의 사항을 신설한다.

구 분	규 정 명
재 무	자금운용규정

부 칙 <2019.11.22>

이 규정은 2019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9. 9>

이 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2. 21>

이 규정은 202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6. 24>

이 규정은 2022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